

2025년 68기 동대문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□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?

-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

□ 아이돌보미 역할 (참고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)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수행

(1) 시간제

- 대상연령 : 생후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
-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 및 학교·학원 등·하원, 준비물 보조 등
- 단,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)

(2) 영아종일제

- 대상연령 : 생후 3개월~만 36개월 미만 아동
-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한 활동 등

2.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

1. 신청대상 및 모집인원

1) 신청대상

- 아이돌봄지원법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,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
•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」 제1~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

- 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- 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④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
• 아이돌봄 양성교육(표준교육과정) 수료자(120시간)

• 아이돌봄 양성교육(단축교육과정) 수료자(40시간)

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 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단축대상자

- ① 「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,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아동양육 관련 분야* 학사 이상 소지자

*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아동,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

2) 우대사항

- 장기 활동가능자, 영아돌봄 가능자
-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
- **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**

3) 모집인원 : 00명

2. 접수 기간 및 순서

1) 접수 기간

- 2025.08.25.(월) ~ 2025.09.12.(금) 14:00까지 (12:00-13:00 접수불가)

2) 접수 순서

① 서류 방문 제출 ***필수**

- 서류 제출은 센터에 전화(02-957-0756)하여 날짜 확정 후 방문

- 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89, 구민행복센터 2층

※ 서류 제출 시 인·적성검사 및 우울척도검사가 진행되며,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

② 온라인 접수

-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(<https://care.idolbom.go.kr>) 접속

※ 회원가입→지원 및 양성→모집 공고→2025년 68기 동대문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→지원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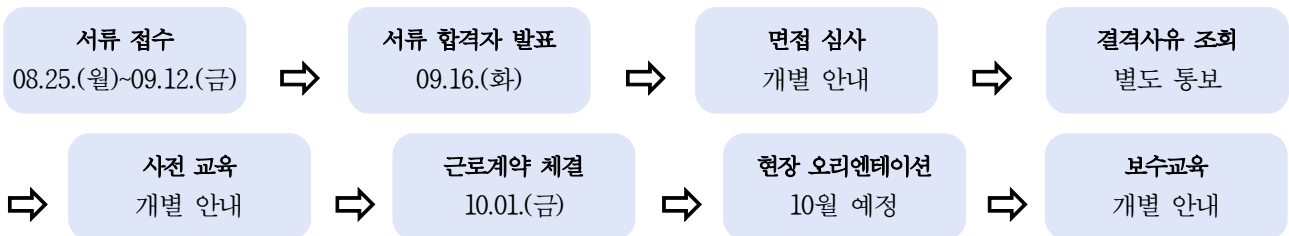
3. 제출 서류

서류 심사 제출서류	공통서류	-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- 개인정보동의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
	자격 소지자	-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 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	양성교육 수료자	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면접 심사 시 제출서류	가족관계증명서 1부	
면접 심사 후 제출서류	채용신체검사서 1부*	
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	- 급여통장 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	

※ 채용신체검사서

- 전염성질환(홍부방사선 검사, B형 간염)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
- 제출 일자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

4. 진행절차



※ 서류 접수 시 인·적성검사와 우울척도검사가 진행됨

※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혹은 심사 일정에 미참여 시, 불합격 처리

※ 자세한 면접일정은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할 예정임

※ **사전교육 및 현장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**

※ 아이돌보미 결격사유(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) 조회 항목

-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- 정신질환자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[아동복지법]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
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
- [아이돌봄 지원법] 제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
- [아이돌봄 지원법]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5. 보수교육

- 1) 교육시간 : 09:00 ~ 18:00 (1일 8시간 2일, 총 16시간)
- 2) 교육내용 :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,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
- 3) 비 고
 - 양성교육 감면대상자
: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 제1~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채용되는 경우,
보수교육 이수 필요
 -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

6. 현장 오리엔테이션

- 선배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진행(총 10시간)

7. 근무조건

- 1) 활동시간
 - 1일 8시간 이내, 1주 40시간 이내 근무
 -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·휴일¹⁾·야간 근로 가능
- 2) 활동분야 및 배치
 -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돌봄
 - 등원·하원 돌봄(1회 2시간 이상) 중심
- 3) 급여 및 복리후생
 - 시간당 10,590원 및 서울시 별도지원비 제공(시간당 500원 또는 1,000원)
 -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시 영아돌봄 수당 지급 (시간당 1,500원)
 - 돌봄활동 유형에 따른 서울형 3종 틈새돌봄 수당 지급
 - 4대보험 가입 및 명절수당, 법정수당(주휴수당, 유급휴일수당 등) 지급

8. 기타

- 1)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2)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 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.
- 3)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.

9. 문의

- 1) 동대문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☎ 02-957-0756

1) 법정휴일(주휴일, 근로자의 날), 무급휴일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)